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6. 20(목) 10:00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안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55호
- 나. 제 출 자 : 엄셋별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5. 28.
- 라. 회부일자 : 2024. 5. 28.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및 도서 우선 구매(안 제5조 ~ 제6조).
- 라. 홍보 및 포상(안 제7조 ~ 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4. 5. 29. ~ 2024. 6. 5.

## 5. 검토의견

### 가. 제정 이유

본 제정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나. 주요 내용

#### 1)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제정 목적을 규정함
- 지역 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2)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및 도서 우선 구매(안 제5조 ~ 제6조).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구와 서점과의 연계 사업 등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도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근거함

#### ○ 관내 지역서점 현황

| 연번 | 서점명              | 주 소              | 비고 |
|----|------------------|------------------|----|
| 1  | 가람프라자            | 시흥대로41길 95       |    |
| 2  | 대일서점             | 시흥대로 474         |    |
| 3  | 동일서점프라자          | 금하로 771          |    |
| 4  | 반도서점             | 독산로 136          |    |
| 5  | 본동서적             | 금하로 631-7        |    |
| 6  | 선서적              | 독산로74길 6         |    |
| 7  | 올오어낫싱<br>(바이클로지) | 시흥대로 315, 204호   |    |
| 8  | 원테이블             | 독산로8길 14         |    |
| 9  | 홈통(유알아트)         | 시흥대로73길 11, 309호 |    |

#### ○ 지역서점 도서구매 실적

(단위 : 천원)

|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
| 예산액 | 105,000 | 173,104 | 192,871 | 279,679 |

#### 3) 홍보 및 포상(안 제7조 ~ 제8조).

#### 다. 검토의견

- 인터넷 서점 등 도서구매환경의 변화 및 독서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서점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2021. 8월 개정하여 대책마련을 도모함.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은 없음.
- 독서 문화는 지역 사회의 많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주민 문화 생활이며 지역 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과 주민의 독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문화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료됨.

# 관계법령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9호, 2023. 8. 8., 일부개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9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